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단143947(본소), 2021가단1859(반소) 판결
[비신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하

담당변호사 김다솔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1. 10.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보령시 C에 있는 D비신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9. 6. 26. 원고 소유의 D 비신을 보관하되, 차후 건립처가 제의해오면 서약금액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태안군으로부터 E예술회관 앞에 D 비신을 설치할 것을 제안받고, 2019. 4. 26. 피고가 보관하던 피고 소유의 비신 1개를 설치하고, 태안군에서 지급받은 200,000,000원에서 설치비용, 커미션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2019. 4. 26. 50,000,000원, 2019. 6. 3.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3호증, 7호증, 을 1호증, 3호증, 4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6. 26. 약정한 200,000,000원은 태안군이 비신 설치를 제의해온 시점이 늦어도 2019. 4. 26. 비신 설치 시점 이전이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태안군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 소유의 비신을 설치하게 된 것만으로 이 사건 서약서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서약서의 비신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비신 2개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3.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의 200,000,000원이 아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새로운 약정이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약정으로 정지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새로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태안군의 실제 비신 설치 대금 중 설치비용, 커미션 등을 공제한 금원 자체가 20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이 있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호증, 5호증, 8호증 내지 10호증, 을 7호증,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안군에서 피고로부터 D 비신을 350,000,000원에 설치하려다가 2019. 3.경 태안군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중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여 개인의 기부로 200,000,000원에 설치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3.경 피고가 태안군에 비신을 건립하고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보관하는 원고 소유의 전각 작품을 인수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65,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태안군에 비신을 건립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직 200,0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150,000,000원만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원래대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여 위 약정을 철회한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비신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위 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